

제242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2019. 9. 16. ~ 9. 23.)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 4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96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
2019-97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98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2019-99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96
----------	---------

발의일자	2019. 9. .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 다. 다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추경예산 반영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 ~ 9. 10.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명	학교 학년 반		
주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은 금액	
------	-------------------------	-------------	--

「거창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

관할 읍·면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의 거창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전자정부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소계		360	360	360	360	360	2,425
세출	군비	360	275	180	180	180	1,800
세입	도비	-	85	180	180	180	625

3. 관련의견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교복구입비 : 평균 1,200명 × 300천원 = 360백만원

2. 신입생 예상인원(2019.1월 인구현황 기준)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계	1,162	1,101	1,133	1,024	1,011	
중학생	465	567	569	502	475	2,578
고등학생	697	534	564	522	536	2,853

※ 교복 미착용 학교 현황 : 거창고, 셋별중, 웅양중, 거창중 고제분교,
거창중 신원분교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9-97
----------	---------

발의일자	2019. 9. .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월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2호)
- 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안 제4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도로교통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 ~ 9. 10.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항 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생략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p>②~③ (생략)</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현행과 같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p>②~③(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98
----------	---------

발의일자	2019. 9. .
발 의 자	심재수,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 ~ 9. 10.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24.]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99
----------	---------

발의일자	2019. 9. .
발 의 자	이재운,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개발 및 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사회복귀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노력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4. ~ 9. 10.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